문서번호	사회복지과-28407
결재일자	2015.11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 ⊙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국장	
전소연	전종대	강종식	11/04 소판수	
협조				

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
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

성 동 구
(사회복지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☐ 공약(약속)사업 ☐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☐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민 : 유☐( ) 무☑ ● 전 문 가 : 유☐( ) 무☑ ● 이해당사자 : 유☐( ) 무☑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☐ 환경영향 ☐ 안 전 ☐ 유지비용 ☐ 바른 공공언어 ☐ 성 인 지 ☐ 취약계층 ☐ 장 애 인 ☑ 디 자 인 ☐ 갈등발생 요인 ☐
타자원 활용	● 중 앙 부 처 : 유☐( ) 무☑ ● 서 울 시 : 유☐( ) 무☑ ● 기 업 : 유☐( ) 무☑ ● 민 간 단 체 : 유☐( ) 무☑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☐ 보도자료 ☐ SDTV ☐ 성동뉴스레터 ☐ 성동구소식지 ☐ 기 고 문 ☐ 전자행정서비스 ☐ S N S ☐ 기타(리플릿 등) ☐ 없 음 ☑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-

-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

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 도모

Ⅰ 추진근거

○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(질문 및 검사)

○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

Ⅱ 사업 및 점검 개요

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

○ **사업대상**: 만6세~만65세의 1~3급 장애인,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

- 인원: 310명(2015. 10월말 기준)

○ **사업절차**

서비스 이용권 신청 및 접수	소득조사	조사결과 확인 및 결정	선정결과 통지 서비스 이용 안내	이용자 및 제공기관 관리
동주민센터	동주민센터	구청	구청, 동주민센터	구청

○ **사업내용:**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이동보조 등 지원

- **서비스 단가:** 시간당 8,810원(주간, 평일) 13,210원(야간,공휴일)
- **사업비 지급절차**

(성동구) 사회보장원으로 매월 사업비 예탁→ **(사회보장원)** 제공기관에서 청구한 서비스 비용 지급 → **(제공기관)** 지급 비용으로 활동보조인 인건비 등 사용

☐ 지도·점검 개요

○ 점검기간: 2015. 11. 19. ~ 11. 23.(3일간)

○ 점검범위: 2014. 11. 1. ~ 2015. 10. 31. 기간중 운영실태 전반

○ 점검기관: 사회복지과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성동광진장애인지원센터 합동점검

-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담당 1명
- 성동광진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담당 1명

○ 점검대상(기관):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내 제공기관 3개소

- **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,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성동돌봄센터**

○ 점검방법: 현장방문 및 관련서류 점검

○ 점검사항(붙임 1 점검표에 의거 점검)

- 제공기관 지정기관 준수 여부
-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
- 부정.부당청구 여부등 결제 자료 점검

Ⅲ 세부 점검계획

☐ 점검 기관 현황 및 일정

기관명	위치	연락처	이용대상자 현황(단위:명)	점검 예정일
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	청계천로 506 (마장동)	2290-3131	117	2015. 11. 19.
성동돌봄센터	성수일로8길 82 (성수동2가)	2299-6604	29	2015. 11. 20.
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	고산자로 269 (도선동)	6214-3525	112	2015. 11. 23.

※ 점검일은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 이용대상자 현황은 우리구 이용자 현황으로 2015. 10. 31.기준임.

- 활동지원대상자 총 310명으로 관내 제공기관 258명, 관외 제공기관 52명 이용

☐ 점검 내용

①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여부

- 대표자 및 제공인력의 자격 적정 여부
- 제공인력과의 계약서 자료작성 준수 여부 등

②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

- **제공인력의 대한 급여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,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**
  - ▸ **서비스 비용의 75% 이상을 제공인력의 인건비로 사용**하는지 중점 확인
- 사업비 관리 실태 및 수익금 운영 적정 여부 및 별도 회계 관리 여부
- 제공기관(제공인력) 바우처 카드 보관 여부 등

③ 부정.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

- **바우처결제 의심사례 유형 중점 점검(붙임2 주요점검사항 참고)**
  - ▸ **현장점검 전 모니터링 실시하여 의심사례에 대해 중점점검**
-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기재사항 확인
- 기타 지침 외의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

④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확인

- 현장점검 중 허위.부당청구가 의심되어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 (보호자)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**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**

☐ 점검결과 조치계획

❍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·개선 조치

❍ 위법·부당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당급여 징수, 벌칙, 행정처분 등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

❍ 지도·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지속 실시

Ⅳ 행정사항

❍ 바우처 결제자료 사전 모니터링 실시: 2015. 11. 17. 한

❍ 피점검기관 점검사항 사전 안내: 2015. 11. 6. 한

❍ 국민연금관리공단 합동점검 관련 협조 요청: 2015. 11. 6. 한

❍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사항 확인: 2015. 12. 1. 이후

붙임 1. 현장점검 확인서(점검표) 서식 1부.

2. 부당청구 및 이상결제 중점점검사항 및 유형별 점검내용 1부. 끝.

붙임1 **현장점검 확인서식**

현장점검 확인서

제공기관명	
관할 시군구	
사업명	
대표자	
사업개시일	
제공기관 소재지(연락처)	
제공인력수(10월말 기준)	
결제 단말기수	

□ 확인 사항

구분	점검 사항	지적사항
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사항	대표자 자격 여부	
	제공인력 자격 여부 (자격적정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)	
	제공인력 정보등록 준수 여부 (바우처시스템 등록)	
	제공인력과의 계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 여부	
	활동지원급여 모니터링 준수여부 (반기별 1회이상 실시)	
제공기관 사업 운영 실태	이용자 교육여부 (급여제공이후 2개월이내 이용자 안내실시)	
	제공인력 배상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	
	서비스 단가의 75%이상으로 제공인력 임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등 사업비 관리 실태	
	수익금 활용범위 적정성 여부	
	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적정 계약서(약정서) 여부 및 내용 확인	
	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여부	
	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	
	제공기관 바우처카드 보관,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소지여부	
	무허가 단말기 사용 여부	
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·부당 청구 여부	부당청구 사례 청구 여부 (붙임1 참조)	
	이상결제 사례 청구 여부 (붙임1 참조)	
	제공기록 관리 위반	
	본인부담금 미납, 대납	
	기타 위반 사항	

2015. 11. .

확 인 자	0000	00장	000	(서명)
점 검 자	성동구 사회복지과	000	000	(서명)
점 검 자	국민연금관리공단 성동광진지사	000	000	(서명)

성동구청장 귀하

붙임2	바우처결제관련 점검사항 및 유형별 조사방법

Ⅰ. 부당청구 유형

ㅁ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
ㅁ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(기관)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

ㅁ 활동지원인력(기관)이 수급자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

Ⅱ. 바우처 이상결제 유형

ㅁ **소급결제**

ㅇ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직후 실시간으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번에 결제하는 이상결제 유형

ㅁ **중복결제**

ㅇ 1:1 서비스 제공원칙 외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서로 다른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이상결제 유형

ㅁ **심야결제**

ㅇ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결제

ㅁ **예외결제(ARS,유선)**

ㅇ 결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보급되어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결제 수단(ARS, 유선)을 사용하는 이상결제 유형

*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단말기 미보급 등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확인 필요

ㅁ **연속결제**

ㅇ 한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시간 내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

ㅁ **선결제**

ㅇ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전에 미리 결제

ㅁ **친인척결제**

ㅇ 가족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 (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간 가족관계 확인)

Ⅲ. 부정부당청구 유형별 조사방법

ㅇ **(수급자 카드수거 사용)** 수급자가 지적·자폐장애 이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카드 보관 가능

* 그 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청구로 간주

ㅇ **(이상결제 및 부정사용 의심사례)**에 해당되는 제공인력,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기록지, 결제시간 등을 점검하여 부정 의심사례 확인

- 해당하는 결제내역과 서비스 제공기록지 비교 후 실제 서비스 시간을 기재하도록 지도

ㅇ **(일괄결제)**의 경우,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록 여부 확인

*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사유를 기록하도록 지도

ㅇ **(중복결제)**의 경우, 서비스 내용 및 동시간대에 중복하여 결제된 사유 집중 확인

ㅇ **(심야결제)**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결제 내역의 시간 확인

- 심야시간에 서비스 제공한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록지 확인

ㅇ **(예외결제**(ARS,유선))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재를 확인하고, 부득이하게 예외결제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실시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

ㅇ **(연속결제)**는 이용자 주소,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과 결제 확인

- **(선결제등 기타결제)**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 및 결제 확인
- 다음의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**카드를 소지한 후 결제**했는지 확인
  ① 중복결제 이용자
  ② 일괄결제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유사한 시간대에 집중된 경우
  ③ 심야시간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결제가 있는 경우
  ④ 심야시간 대에 일괄결제를 진행한 경우
-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통해 지침 상 금지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